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2016. 5. 1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2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5월 4일(수)

4.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11조(세율), 제115조(납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에 대해 법제 운영 효율성 고려 정비(1개 조항)

- 법제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한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안 제6조)

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4개 조항)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안 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납기(안 제7조, 안 제9조), 재산세 종과대상 지역(안 제8조)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4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4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조례 적용을 위해 기본조례(표준조례)안을 마련·시달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등록면허세·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등을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법 개편 내용(2011년도)

종 전	개편 후	자치단체 조례
지방세법(총칙편)	지방세기본법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지방세법(개별법)	지방세법	마포구 구세 조례
지방세법(면제경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마포구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구세 조례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현 행	개 정	비 고
19개 조항	9개 조항	

- 1)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정비=> 1개 조항
- 안 제6조(지자체 조례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
- 2)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 4개 조항
- 안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안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안 제8조(재산세 종과대상 지역), 안 제9조(재산세의 납기)
- 3)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4개 조항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시행규칙)

○ 주요 조항별 개정내용으로는

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정비

- 1) 안 제6조(지자체 조례 적용세율 통일) 법제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적용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

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 정비

- 1) 안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안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함

3) 안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함

4) 안 제9조 (재산세의 납기)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1)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름

4)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라. 동(同) 조례 삭제, 신설, 변경 현황

[삭제 조례 현황] 제6조(신고 및 납부), 제7조(세율), 제9조(비과세 신청), 제10조(세율), 제13조(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제1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5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16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제17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18조(공용·공익 사업용의 폐지신고), 제19조(납세관리인의 지정)

[신설 조례 현황]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변경 조례 현황】 제4조(과세표준)=>제5조(과세표준), 제5조(세율)=>제6조(세율), 제8조(납기)=>제7조(세율), 제11조(중과대상지역)=>제8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납기)=> 제9조(납기)

=> “별표 1”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현황표 1부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3.31.~4.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또한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사항 및 행정자치부 기본조례(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상위법인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지방세 관련 민원 불편해소와 재산권 피해 방지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 현황

※ 참고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구세기본조례

종전 조례	개정조례	참고법령
제1장 총칙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현행과 같음	기본조례제3조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신설
제2장 등록면허세	현행과 같음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현행과 같음	
제4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제27조
제5조(세율)	제6조(세율)	법제28조
제6조(신고 및 납부)	삭제	법제3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현행과 같음	
제7조(세율)	삭제	법제34조
제8조(납기)	제7조(세율)	법제35조
제9조(비과세 신청)	삭제	근거법 없음
제3장 재산세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율)	삭제	법제111조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제111조
제12조(납기)	제9조(납기)	법제115조
제13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법제120조
제1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법제120조
제15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법제120조
제16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삭제	법제120조
제17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삭제	법제120조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삭제	근거법 없음
제19조(납세관리인의 지정)	삭제	근거법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5호, 2015.7.24., 타법개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
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
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액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9.1.] 제28조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

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
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1024호(개정 2016.05.)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5.〉